

제28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2025.12.12.)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총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박혜진]

<의안번호 제2025 - 130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4. 11. 2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4. 11. 22.

2. 제안사유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각 기금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서에서 설치·운영 중인 기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에 제출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받기 위함.

3. 기금개요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59조 : 재산과 기금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나. 운용방침

- 지방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 자금임
- 자금 운용체계를 총괄부서와 운영부서로 이원화하여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 총괄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운용부서 : 각 기금관리운용 관·과·소
- 각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도록 기금을 관리·운용

4. 총괄 기금운용계획(안)

- 기금조성규모 (단위 : 천원)

기금명	2024년도 말 조성액 ①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2025년도 말 조성액 ④=①+②-③	증 감 ⑤=④-①
		수입②	지출③		
합 계	76,705,809	2,261,676	44,281,620	34,685,865	△42,019,944
총무위원회 소 관	71,936,551	1,258,340	43,260,520	29,934,371	△42,002,180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63,539,358	757,711	42,200,000	22,097,069	△41,442,289
고향사랑 기 금	606,357	315,638	165,000	756,995	150,638
식품진흥 기 금	134,071	50,820	49,920	134,971	900

기 금 명	2024년도 말 조성액 ㉑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2025년도 말 조성액 ㉒=㉑+㉓-㉔	증 감 ㉕=㉒-㉑
		수 입㉓	지 출㉔		
중소기업 육성기금	4,578,768	35,750	800,000	3,814,518	△764,250
아름예술제 진흥기금	525,173	14,087	4,000	535,260	10,087
사회복지 기 금	2,552,824	84,334	41,600	2,595,558	42,734
산업건설위원회 소 관	4,769,258	1,003,336	1,021,100	4,751,494	△17,764
재난관리 기 금	3,311,253	941,000	992,500	3,259,753	△51,500
옥외광고 발전기금	339,966	26,000	8,600	357,366	17,400
체육진흥 기 금	1,118,039	36,336	20,000	1,134,375	16,336

○ 2025년도 말 기금 총 조성액은 2024년도 말 조성액 대비 420억 1,994만 4천원이 감액(△54.78%)된 346억 8,586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10억원 일반회계 전출,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예수금원금상환 12억원임.

○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 총무위 소관

(단위 : 천원)

구분	기 금 명	계	전입금	보조금	예치금 회 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수입 계 획	합 계	73,194,891	35,750	44,320	71,936,551	857,170	321,100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64,297,069	-	-	63,539,358	757,711	-
	고향사랑 기 금	921,995	-	-	606,357	2,038	313,600
	식품진흥 기 금	184,891	-	44,320	134,071	4,000	2,500
	중소기업 육성기금	4,614,518	35,750	-	4,578,768	-	-
	아름예술제 진흥기금	539,260	-	-	525,173	14,087	-
	사회복지 기 금	2,637,158	-	-	2,552,824	79,334	5,000

구분	기 금 명	계	비용자성 사업비	용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 지출 등	
지 출 계 획	합 계	73,194,891	1,060,520	-	29,934,371	42,200,000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64,297,069	-	-	22,097,069	42,200,000	
	고향사랑 기 금	921,995	165,000	-	756,995		
	식품진흥 기 금	184,891	49,920	-	134,971		
	중소기업 육성기금	4,614,518	800,000	-	3,814,518		
	아름예술제 진흥기금	539,260	4,000	-	535,260		
	사회복지 기 금	2,637,158	41,600	-	2,595,558		

5. 검토의견

▣ 통합재정안정화기금<기획예산담당관>[p25]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재정법」 제9조의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며,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회계 간 예수·예탁을 통한 지방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2020년에 조성하였으며,
- 기금사업의 목표로는 재정안정화계정은 세입이 증가할 때 재원의 일부를 적립하여 세입이 부족할 때 사용함으로써 군 재정 운용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고,
- 통합계정은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예탁·예수하여 통합적으로 재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임.
- 재원은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운용 수익금으로 조성된 재정안정화계정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 운용 수익금으로 조성된 통합계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지원기준으로 재정안정화 계정은 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 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경비,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 채무부담 사업비, 그 밖에 군정 추진에 필요한 경비에 지원하도록 하고,

- 통합계정은 다른 회계와 기금으로의 예탁,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통합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전년도 말 기준 기금 적립금 총액의 90%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음

- 2025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총 수입은 전년도 수입액 대비 602억 4,228만 9천원이 감액된 642억 9,706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전년대비 지방교부세 45억 8천만원(△1.45%), 조정교부금 2억원(△0.70%), 보조금 12억 570만 1천원(△0.50%)이 감소되어 총 59억 8,570만 1천 원이 줄었으나
- 지출계획은 재정안정화계정에서 410억원을 일반회계로 진출시키고, 통합계정에서 12억원을 농업발전자금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상환하는 것으로써 25년도 말 총 조성 규모는 220억 9,706만 9천원으로 예상함.
- 본 기금은 군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조성하는 것으로 일반회계와 기금 간 여유 재원을 적기에 활용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목적이지만 기금 규모 및 용도에 큰 제한이 없어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쓸 수 있어 자칫 ‘쌈짓돈’ 으로

전략할 우려가 있으며 예산의 일부를 기금으로 비축해 두고 향후 공약사업이나 원하는 특정 사업에 이용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용 계획에 대한 심사가 필요함.

■ 고향사랑기금<전략담당관>[p33]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에 따라 고향 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2023년에 조성하였음.
- 기금사업의 목표는 사회적 취약계층과 청소년 육성·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임.
- 2025년도 기부금 수입액은 3억 1,360만원으로 예상하며, 예치금회수 6억 635만 7천원, 이자수입 203만 8천원으로 2025년도 총 수입액은 9억 2,199만 5천원으로 예상함.
- 지출계획은 아래와 같이 1억 6,500만원임.

사 업 명	금 액(천원)	비 고
합 계	165,000	
청소년 수련관 환경개선 사업	30,000	자산및물품취득비
거창 유소년 축구단 지원	35,000	민간경상사업보조
고향사랑 공연 개최	100,000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위와 같이 비용자성사업에 1억 6,500만원을 지출하고 25년도 말 조성액은 7억 5,699만 5천원으로 예상함.

- 2025년 고향사랑기부제가 크게 3가지 분야에서 달라짐.
 - ① 1인당 연간 고향사랑 기부 한도 증가(1인당 2,000만원)
 - ② 홍보 규제 완화에 따른 기부 독려 방식 확대
 - 사무실 혹은 사업장 등 업무를 위한 장소로서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 및 독려하는 행위
 - 개별적인 전자적 전송 매체(문자 등)를 활용하는 경우, 수신자별로 분기당 2회 이하 가능
 - ③ 민간플랫폼 활용가능
 - ④ 지정기부 가능(고향사랑 e음) / 2024. 5월 기시행

- 2025년부터는 위와 같이 제도가 개선되어 인당 기부 한도가 2천만원으로 늘고 적극적인 홍보가 가능해졌음에도 기부금 목표액이 3억 1,360만원 밖에 안되는 것은 소극 행정으로 비침.

- 또한, 기부금은 모았는데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우와좌왕하지 않도록 지정기부가 5월에 이미 가능해졌음에도 거창군에서는 사업발굴을 하지 않았음. 기부자에게 기부금의 구체적인 용도를 명시하고 자금을 모을 수 있는 굵직한 사업 발굴과 홍보가 절실히 보임.

[참고] 타 지자체 지정기부 사례

● 진행중 ○ 종료

모금율순 ▾ | 사업구분 전체 ▾



2024-07-30 ~ 2024-12-31
저소득 어르신 영양보약 지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10,000,000원
93.55% 진행



2024-11-20 ~ 2025-03-31
고독사 위기가구 조기발견 해...
 전라남도 해남군
 5,000,000원
81% 진행



2024-06-04 ~ 2024-12-31
취약계층 목욕이용권 지원사업
 경상남도 하동군
 40,000,000원
43.34% 진행



2024-06-04 ~ 2024-12-31
유기·피학대 동물 구조·보호...
 경상남도 하동군
 200,000,000원
41.28% 진행



2024-06-26 ~ 2025-12-31
산청군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경상남도 산청군
 50,000,000원
38.75% 진행



2024-08-01 ~ 2024-12-31
야생벌 봉봉이를 지켜주세요!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100,000,000원
34.18% 진행



2024-11-01 ~ 2024-12-31
성동구 자립청년의 미래에 함...
 서울특별시 성동구
 78,000,000원
33.71% 진행



2024-06-04 ~ 2026-12-31
발달장애 청소년 E.T 야구단
 광주광역시 동구
 82,000,000원
27.61% 진행

소식지
 댓글상단
 TOP

● 진행중 ○ 종료

모금율순 ▾ | 사업구분 전체 ▾



2024-10-02 ~ 2024-12-31
영암 고향사랑 소아청소년과...
 전라남도 영암군
 270,000,000원
16.37% 진행



2024-11-20 ~ 2025-05-31
의료급여수급자 냉장고를 부...
 전라남도 해남군
 12,000,000원
15.83% 진행



2024-11-07 ~ 2025-12-31
덧셈의 삶, 마하(MACH) 2.0+...
 충청북도 진천군
 100,000,000원
15.61% 진행



2024-07-25 ~ 2024-12-31
어르신 돌봄을 위한 마을빨래...
 전라남도 곡성군
 188,600,000원
13.3% 진행



2024-07-30 ~ 2024-12-31
저소득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
 서울특별시 은평구
 21,000,000원
12.76% 진행



2024-06-04 ~ 2025-12-31
서천 특화시장 재건축 사업
 충청남도 서천군
 500,000,000원
10.68% 진행



2024-06-04 ~ 2026-12-31
광주극장 시설개선 및 인문문...
 광주광역시 동구
 200,000,000원
9.25% 진행



2024-11-20 ~ 2025-09-30
청소년 뮤지컬 학교폭력 예...
 전라남도 해남군
 30,000,000원
8.66% 진행

소식지
 댓글상단
 TOP

▣ 식품진흥기금<민원소통과>[p41]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2001년에 조성하였으며,
- 기금사업의 목표는 기금 운용으로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재원은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보조금, 「식품위생법」 제82조 및 제83조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어
- 매년 수입금 범위 내에서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관내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식중독 예방관리 및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사업 지원, 식품접객업소 위생환경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2025년도 수입액은 1억 8,489만 1천원으로 예상하며 보조금이 전년 대비 소폭(102만 2천원) 증가하였음.

항 목	금 액(천원)	비 고
합 계	184,891	
공공예금이자수입	4,000	
과 징 금	2,500	
시·도비 보조금등	44,320	
예치금회수	134,701	

- 2025년도 지출계획은 다음과 같이 4천 992만원이며, 나머지 금액인 1억 3,497만 1천원은 예치할 예정임

항 목	금 액(천원)	비 고
합 계	49,920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물품 구매	8,000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600	
음식점 위생등급 추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700	
집단급식소 냉장고 온도계 구매	620	
일반음식점 대상 주방 위생환경 개선사업	35,000	
안심식당 홍보물품 구매	5,000	

- 위 사업들은 음식문화개선과 식품위생에 관련된 사업으로 기금사업의 목표에 맞게 계획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중소기업육성기금<경제기업과>[p51]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및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2005년에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 기금사업의 목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이차보전 재원으로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으로 이루어짐.
- 지원대상은 관내 주사무소를 두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크고 국가시책을 수행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업체이며 융자금 6억원 한도내에서 이자를 지원하고 있음.

- 2025년도 수입액은 46억 1,451만 8천만원으로 예상하며 주 수입 요인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임.

항 목	금 액(천원)	비 고
합 계	4,614,518	
공공예금이자수입	35,750	
예치금회수	4,578,768	

- 2025년도에는 이자지원(민간이전)에 8억원 지출할 예정이며 남은 금액 38억 1,451만 8천원은 예치할 계획임.

항 목	금 액(천원)	비 고
합 계	4,614,518	
예 치 금	3,814,518	
민간이전	800,000	

- 본 기금은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거창군 내 기업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금조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원업체 발굴 등을 통한 적극적인 집행이 필요하며, 전년대비 이자수입이 5,621만 7천원이 감소하였는데 여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비교하여 기금운영에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임.

▣ 아림예술제진흥기금<문화관광과>[p57]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따라 아림예술제위원회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6년에 조성하였으며,
- 기금사업의 목표는 문화예술을 통한 군민 화합을 위해 개최되고 있는 역사와 전통의 거창 아림예술제 진흥과 지역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임.

- 재원은 국도비 보조금, 거창군 출연금 또는 적립 기금, 군 외의 자의 출연금, 아림예술제 행사 잉여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구성됨.
- 2025년도 수입액은 총 5억 3,926만원으로, 이자수입 1,408만 7천원, 예치금 회수액이 5억 2,517만 3천원임.
- 2025년도 지출계획은 아림예술마당 행사(민간행사보조)에 400만원으로 나머지 5억 3,526만원은 예치할 계획임.
- 아림예술마당행사 지원은 거창 지역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금의 설치 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됨.

■ 사회복지기금<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p63]

-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조성하였으며,
- 기금사업의 목표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지원, 저소득 주민의 창업자금과 자활기업 지원 등으로 자활자립 도모,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와 참여자의 자립역량 강화에 있음
- 재원은 군 출연금, 기탁금, 기금운용 이자수익금, 기타수입금으로 구성되며, 노인복지계정과 자활계정으로 구성됨
- 2025년도 수입액은 총 26억 3,715만 8천원이며 노인복지계정 수입이 11억 4,371만 2천원, 자활계정 수입이 14억 9,344만 6천원임.

항 목	항 목	금 액(천원)	비 고
합 계	합 계	2,637,158	
노인복지계정	공공예금이자수입	34,334	
	예치금회수	1,109,378	
자활계정	기타사업수입	5,000	* 자활사업 매출
	공공예금이자수입	45,000	
	예치금회수	1,443,446	

- 2025년도 지출계획은 노인복지계정에서 1,760만원, 자활계정에서 2,400만원 지출하고 나머지는 모두 예치할 계획으로 2025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대비 4,273만 4천원 증가한 25억 9,555만 8천원으로 예상함.

항 목	항 목	금 액(천원)	비 고
합 계	합 계	2,637,158	
노인복지계정	지역사회봉사활동지원사업	9,600	
	결혼 60주면 회혼식 개최	8,000	
	예 치 금	1,126,112	
자활계정	자립역량교육지원	9,000	
	자활한마당참가지원	7,000	
	자활사업단, 자활기업 환경개선	8,000	
	예 치 금	1,469,446	

- 2025년도 지출계획 중 지역사회 봉사활동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은 기금의 설치 목적 등에 적합하며, 기금의 목표인 저소득층 자활 및 노인복지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적인 기금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 총괄 검토의견

○ 최근 3년간 조성현황

기 금 명	2023년도말 조성액	2024년도말 조성액	2025년도말 조성액	증 감 (25년-23년)
합 계	89,612,331	71,936,551	29,934,371	△59,677,96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0,838,769	63,539,358	22,097,069	△58,741,700
고향사랑기금	467,950	606,357	756,995	289,045
식품진흥기금	133,091	134,071	134,971	1,880
중소기업육성기금	5,136,801	4,578,768	3,814,518	△1,322,283
아름예술제진흥기금	512,605	525,173	535,260	22,655
사회복지기금	2,523,115	2,552,824	2,595,558	72,443

-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6개 운영중이며, 2025년도말 조성액은 기금총액은 2023년 대비 596억 7,796만원이 줄어든 299억 3,437만 1천원으로, 주요 감소 요인은 정부 세수 감소로 인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일반회계 전출임.
- 본래 기금은 예산단일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사항인 만큼 일반회계 사업과 중복되거나 실제로 실효성이 없는 기금은 과감히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 고금리 예치 등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와 기금별 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사업발굴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지방재정법

제9조의2(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포괄기금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기금은 제외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조례의 폐지 및 제정·개정 절차에 따라 여러 기금을 묶어 둘 이상의 목적을 수행하는 하나의 기금(이하 "포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포괄기금은 수행하는 목적별로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 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의 전출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 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용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 4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이 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상환액의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용자 사업
- 7의2.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 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④ 기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운영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제5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에 따라 거창군의 사회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거창군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복지기금의 설치)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금을 통합하여 거창군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노인복지기금
2.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양성평등기금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에 따른 자활기금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기금과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양성평등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비·도비 보조금
2.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연금 또는 적립기금
3. 군 외의 자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
5. 기금의 대여 및 운용에 따른 수익금
6. 그 밖의 수익금

제5조(노인복지계정의 용도) 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계정(이하 “노

인복지계정”이라 한다)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사업 지원
2.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지원
3. 노인문제상담소 운영 지원
4.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지원
5.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 운영 지원
6.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7.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군내 노인 관련 단체로 한다.

제6조(양성평등계정의 용도) ①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양성평등계정(이하 “양성평등계정”이라 한다)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2. 「양성평등기본법」 제40조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사업 지원
3.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지원
4.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지원
5.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지도자 양성 지원
6. 그 밖에 양성평등 발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군내 양성평등 관련 단체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지원은 제외한다.

제7조(자활계정의 용도) 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활계정(이하 “자활계정”이라 한다)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6조의4 각 호의 용도(같은 조 제8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하 “자활기업”이라 한다) 및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이하 “지역자활센터”라 한다) 내 자활근로사업단(이하 “자활근로사업단”이란 한다)의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 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의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 지원
4.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5.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전문상담 지원
6. 그 밖에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의 자활 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나 거창군에 소재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으로 한다.

③ 자활계정 지원한도 및 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자한도액

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장: 5천만원

나. 개인: 2천만원

2. 용자금 대부이율: 연 1퍼센트로 하고, 상환기간이 지난 후 상환하는 사업자금에 대해서는 연 4퍼센트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거치 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제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별로 자금을 구분하여 관리·운용한다.

1. 노인복지계정

2. 양성평등계정

3. 자활계정

②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안정성이 보장되는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은 해당 연도의 가용기금과 운용이자의 수익 범위에서 집행한다.

제9조(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정책과장이 된다.

④ 민간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

1. 노인 복지, 양성평등,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사업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2명

2. 사회복지 관련 단체의 대표자 3명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사회복지 관련 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13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거창군 아립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아립예술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창군 아립예술제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아립예술제”란 향토문화예술 진흥과 군민화합의 장이 되도록 아립예술제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행사를 말한다.

② “아립예술제위원회(이하 “아립제위원회”라 한다)”란 아립예술제의 문화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으로 구성된 사단법인을 말한다.

제3조(아립예술제진흥기금 설치)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립예술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창군 아립예술제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국비·도비 보조금
2.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연금 또는 적립기금
3. 군 외의 자의 출연금
4. 아립예술제 행사 잉여금
5. 기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아립예술제 행사
2. 그 밖의 아립예술제 진흥과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안정성이 보장되는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

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해당 연도 운용이자의 수익 범위에서 집행한다.

제8조(아림예술제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문화관광과장, 재무과장

2. 위촉직 위원: 문화예술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3명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문화예술 관련 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회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